



# 가정통신문

꿈과 희망이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

전주예술고 2025-교무-09호

## 전주예술고등학교 학교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

(「교원지위법」) 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

### 1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된 내용

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, ‘지역교권보호위원회’로 이관(학교→교육지원청)

■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

- 「형법」 제2편제11장 무고의 죄
-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
-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①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②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
-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
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

-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,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

### 2 학교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

■ 보호자 등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,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에 민원 신청

■ 학교 민원 신청 방법

신청방법	민원 신청 시 알아들 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대표전화</li> <li>• 온라인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을 통한 민원 신청</li> <li>• 신분을 밝히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(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학생의 학년, 반, 이름, 답변 받을 연락처 등을 요구할 수 있음)</li> </ul>

■ 아래에 해당 경우에 학교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가능

-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
-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
-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·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
-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·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
※ 보호자는 교원에게 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에는 상담이나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음

## ◆ 교육기본법

**제12조(학습자)**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.

② 교육내용·교육방법·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.

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,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, 교원의 교육·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3조(보호자)**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## ◆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

### ○ 보호자의 권리

- 학부모조직을 구성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·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
-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,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

### ○ 보호자의 책임

-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,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
-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
-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·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
-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·청소년의 선도·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
-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
-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

## 3 특이민원에 대한 안내

### ■ 특이민원이란?

□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, 지속적·반복적인 유사 민원, 보복성 민원\* 등

\* 지속적·반복적 면담 요구 및 전화,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,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등

□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특이민원: 단순폭언,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,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, 반복적 폭언,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폭언, 직무강요, 폭행, 상해, 재물손괴, 공용서류 등의 무효, 공용물의 파괴, 성희롱, 허위 민원, 무고, 주거(건조물) 침입, 퇴거불응

■ 교원에 대한 특이민원은 「교원지위법」 제19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동 법 제 20조에 따라 교육청이 형사 고발할 수 있음

2025. 5. 16.

전주예술고등학교장 직인생략